

광주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단5005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8. 4. 19. 접수 제5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5. 2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2. 8. 13.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나. E는 2018. 7. 5. 원고에게 D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8. 27.경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58131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18. 위 법원에서 'D는 원고에게 83,211,124원 및 그 중 33,884,736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9. 28. D에게 송달되어 2018. 10. 13. 확정되었다.

라. D는 2018. 4. 18.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1998. 12. 8. 모친인 망 F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8. 4. 19. 접수 제5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과 전남 담양군 G 도로 10㎡ 중 1/5 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양수한 D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2003. 2. 18.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1/5 지분을 2,000,000원에 양수하고 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치고 나서 D로부터 양수한 위 1/5 지분에 관하여 2018. 4. 18.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피고가 D의 위 1/5 지분을 양수한 이후인 2008. 5. 26.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1998. 12. 8.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D가 2018. 4.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D와 피고가 2003. 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는 2018. 4. 1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전라남도 담양군 H

대 327㎡

-이상-

